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사회산업 위원회
전문위원 전영수

본 개정 조례안은 1994년 3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건명 :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을 돋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취지에 따라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확대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 골자

안 제3조의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에 있어 특별 장학금, 일반 장학금으로만 구분 지급하던 것을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 순에 의하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 성적 100분의 20이내 등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4. 검토 의견

남구 관내에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을 돋기 위하여 제정된 남구 조례로써 현행 조례는 특별 장학금은 학급 성적이 100분의 20이내 학생과 일반 장학금은 학급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학생으로 국한되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가 좁았으며, 개정조례안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학급성적 100분의 20이내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